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24
----------	-------

발의연월일 : 2026. 7. 23.

발 의 자 : 이춘석 · 윤준병 · 김의겸
朴芝源 · 임미애 · 서삼석
김성범 · 정준호 · 안호영
양부남 · 박해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재난 상황을 사칭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지능형 금융사기가 급증하고 있어 지급정지를 통한 피해 방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경우 지급정지요청서 서식을 갖추어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하지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우려하여 긴급 조치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사기관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긴급 지급정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고의·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금융기관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 방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및 제5항, 제11조의3 신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2조제2호다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을 제출하여 제2조제2호다목”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지급정지의”를 “지급정지·긴급 지급정지의”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긴급 지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 특례) 수사기관의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긴급 지급정지 요청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명의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생 략)	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u>제2조제2호다목</u>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 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식</u> <u>을 제출하여 제2조제2호다목</u> -- ----- ----- ----- <u>. 다만,</u> <u>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u> <u>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u> <u>로 긴급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u> <u>있다.</u>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지급정지의</u> 요청 및 피해 자 · 피해금의 통지에 관한 방 법 ·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 ----- <u>지급정지 · 긴급 지급정지</u> <u>의</u> ----- ----- ----- ----- <u>.</u>
<신 설>	<u>제11조의3(긴급 지급정지에 따른</u> <u>손해배상 특례) 수사기관의 제</u>

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긴급 지급정지 요청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를 지급정지하여 명의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